



# 청소용 샴푸아 가족 제품

## I 사례 개요

- 사 례 번 호: NY N357117 (2026.01.12.)
- 쟁 점 사 항: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- 최종 수출국: 캄보디아
- 최종 원산지: 캄보디아



## II 사실관계

용도	• 차량이나 기타 가정에서 표면을 청소하거나 광택을 내는 데 사용되는 양 가족 제품	
재료	 뉴질랜드	• 샤무아 가족
	 캄보디아	• 헤더 카드 • 포장재
Sourcing 및 공정 흐름도	 <p>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sourcing and manufacturing process. It is divided into three main stages: Sourcing, Manufacturing, and Export.   <b>Sourcing:</b> Raw materials (New Zealand flag and cardboard) are used to process 'Shamoa Family Pickle' (샤무아 가족에 피클 처리).   <b>Manufacturing:</b> This stage involves four steps:           STEP 1: Importing 'Shamoa Family' (샤무아 가족 수입) from Cambodia.           STEP 2: Processing (removing impurities, washing, buffing, and dust removal) (무두질 및 기타 공정 수행).           STEP 3: Cutting into specific shapes and sizes (특정 형상 및 크기로 절단).           STEP 4: Production of packaging materials and packaging (포장재 생산 후 포장).   <b>Export:</b> The final product is exported from Cambodia (최종 수출).</p>	
	상세 공정	 뉴질랜드  캄보디아

## III 판정 결과

## 《CBP의 판정》

⊙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무두질은 원피를 새롭고 상이한 물품, 즉 새로운 명칭, 특성 및 용도를 가진 완성된 가족 제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, 해당 공정이 이루어진 캄보디아가 원산지임

→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캄보디아

## IV 시사점

- ⊙ CBP는 청소용 가죽 제품, 러그 등과 같이 원피를 무두질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, 무두질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음
- ⊙ 다만, 가죽의 최종 용도 및 특성, 무두질 공정의 범위 및 국가별 공정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

### 러그에 대한 CBP의 판정 참고 사례

물품명	모피 가죽 러그
사례번호	NY N344773 (2025.01.15.)
쟁점사항	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뉴질랜드 또는 튀르키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에서 조달된 양 원피에 무두질, 건조, 표백, 염색, 재건조, 포장 등 수행</li> </ul> </li> <li>• 중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두질된 원피를 색상과 길이에 맞춰 트리밍</li> <li>- 양가죽 여러 개를 뒷면 직물과 봉제하여 러그 제작</li> </ul> </li> </ul>
판결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뉴질랜드 또는 튀르키예에서 양 원피에 대해 이루어지는 무두질은 원피를 새롭고 상이한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뉴질랜드 또는 튀르키예임</li> </ul>

### 실내 장식용 소가죽에 대한 CBP의 판정 참고 사례

물품명	실내 장식용 소가죽
사례번호	NY N310029 (2020.03.24.)
쟁점사항	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브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피를 건조, 침지, 석회 처리, 플래싱, 탈석회, 피클링, 무두질하여 웨트 블루(wet-blue) 상태로 가공함</li> </ul> </li> <li>• 베트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웨트 블루 상태의 가죽을 두 겹으로 자르고 웨이빙, 중화, 염색, 오일 처리, 건조, 표면 다듬기, 스테이킹(가죽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는 공정), 광택, 마감 처리, 등급 판정 등을 수행하여 최종 제품 생산</li> </ul> </li> </ul>
판결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베트남에서 수행된 공정은 웨트 블루 상태의 가죽을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제품에서 특정 용도에 적합한 제품으로 변화시키므로, 베트남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</li> </ul>

유의사항: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(원재료, 제조공정 등)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